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희원 위원입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 내용 중 인용 조항에 오기가 있어 안 제9조부터 10조의 내용을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고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